

의안번호	제 10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경천의원 등 15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일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1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일

발 의 자 : 최경천, 정상교, 김국기, 김영주
박성원, 이수완, 임동현,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박상돈, 박우양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안 제3조~제4조)
- 다.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라. 교육기관의 활용 및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7조~제8조)
- 마. 취업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안 제9조~제10조)
- 바. 행정·재정지원(안 제11조)

3. 의안전문: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조례안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호

다. 협의: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라. 비용추계: 붙임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현황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일자리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고용 확대) ①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비율이 낮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 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비(수당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지원 등

3. 관련조문

- 안 제5조(청년일자리위원회)
- 안 제9조(취업지원)
- 안 제10조(행정·재정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2년~2026년(5년간)
- 재정수반 요인
 -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10,000천원)
 - 취업역량강화사업(525,000천원)
 - 청년근속지원사업(2,250,000천원)
 -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사업 실적 및 타 시도 보조사업 참고하여 추계(총 144,0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1년간)

-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 10명 × 100천원 × 2회 = 2,000천원
- 취업역량강화사업 : 35,000천원 × 3개소 = 105,000천원
- 청년근속지원사업 : 300천원 × 150명 × 10개월 = 450,000천원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2,000명 × 14,400천원 = 28,800,000천원

○ 산출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46,785,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사업(도비 100%)

-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 취업역량강화사업
- 청년근속지원사업

○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50%)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입	146,785	29,357	29,357	29,357	29,357	29,357
청년일자리위원회(도 100%)	10	2	2	2	2	2
취업역량강화사업(도 100%)	525	105	105	105	105	105
청년근속지원사업(도 100%)	2,250	450	450	450	450	450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국 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2,000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2,000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세 출	146,785	29,357	29,357	29,357	29,357	29,357
청년일자리위원회(도 100%)	10	2	2	2	2	2
취업역량강화사업(도 100%)	525	105	105	105	105	105
청년근속지원사업(도 100%)	2,250	450	450	450	450	450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국 50% 도 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4,0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